

Q. 성년의 아들 甲은 미국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아버지는 의사이고 갑의 유학을 반대하였다. 갑의 형도 외국 소재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형의 유학비용을 모두 지원하였다. 아버지는 甲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까?

A.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


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지만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 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

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Q. 甲은 A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후 A에게 위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었는데, 양도한 시설물 속에는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A에게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냉장고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 유체동산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매도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며 기소하였다. 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A.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데, 본죄는 국가의 기능, 그중에서도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본죄의 행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그래서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직접점유자로부터 간접점유자에게 가져분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져분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 일부를 점유케 한 경우(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그런데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가압류집행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양도하고 타인에게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가사 위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자료/법원사람들)